

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

일부개정 2019.12.27. 특허청훈령 제97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.)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(이하 "운영심의회"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심의회 구성) ①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허청 기획조정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운영심의회는 위원은 특허청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(이하 "청장"이라 한다.)이 위촉한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운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운영심의회 심의사항)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
4.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,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
5.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에 관한 사항
6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7.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특허청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운영심의회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회의소집 등) ①운영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.

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특허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운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운영심의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차기 운영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운영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.

제8조(수당 등의 지급)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 <제973호, 2019.12.27.>

이 규정은 2019.12.27.부터 시행한다.